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6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 강명구·엄태영·구자근

강선영 • 고동진 • 서명옥

김정재 • 주호영 • 박수민

권영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학기·수업일수·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
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4,532학급 중 21%인 11,471학급이며,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,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,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

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학급당 학생 수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,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급 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4조의2(학급당 학생 수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기준을 정하고, 기준을 초과한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고려하여야 한다.